

6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과 과제

|

하남시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상태를 살펴보고, 현재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들을 조사하여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운영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법령, 인터넷 검색을 이용한 문헌연구와 현황과 인식조사로 면담 기법과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안정성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역의 도서관정책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해가야 한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이 마을로 기능하기 위한 입주민들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410	<u>1. 들어가는 글</u>
410	1.1 연구의 목적
410	1.2 연구의 방법
411	1.3 선행연구
412	<u>2. 하남시의 도서관 서비스 현황</u>
412	2.1 현황
413	2.2 작은도서관 현황
413	2.2.1 시설현황
414	2.2.2 봉사대상 및 서비스
415	2.2.3 소장자료
416	2.2.4 운영인력
416	2.2.5 이용 및 이용자
417	2.2.6 운영예산
418	2.2.7 기타
421	<u>3. 작은도서관 법령 및 자치법규 분석</u>
421	3.1 도서관 관련법
421	3.1.1 도서관법
422	3.1.2 작은도서관진흥법과 자치법규
424	3.2 주택법 관련
424	3.2.1 주택법
425	3.2.2 공동주택관리규약
426	<u>4.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과제</u>
426	4.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428	4.2 운영제안
428	4.2.1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쟁점
429	4.2.2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성 확보
429	4.2.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430	4.2.4 공공도서관의 지원과 협력
430	4.2.5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과제
432	<u>5. 맺는 글</u>
433	<u>참고문헌</u> 설문지 1- 이용자용/설문지 2- 운영자용

1. 들어가는 글

1.1 연구의 목적

최근 하남시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구도심의 문화소외를 극복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극복할 대안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하남시 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주택, 교회를 기반으로 한 독서공간의 개별 필요성으로 생겨나 2009년~2014년까지 6~7개소를 유지하였다. 2015년 이후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등록이 활발해져 현재는 모두 7개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운영 중이다. 개관 준비 중인 개소도 여럿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정책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공간조성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으나 개관도, 등록도 못한 상태인 곳도 있다.

하남시는 인구규모 16만의,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중소도시인데 몇 년 사이 인구 22만명을 돌파하며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증가율과 인구유입비율이 큰 도시가 되었다.¹⁾ 2016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하남시의 인구증가는 거주지 필요성 이유가 가장 크며, 유입 인구의 연령대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를 키우는 4인 가족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곧 지역의 경제, 교통 수요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가족이 일상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적 수요가 크다는 것과, 이러한 서비스 수요와 복지수준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필요와 요구가 큰 데 비하여 조성 이후 실제 운영에서 공동주택 내 갈등이 야기되어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실제 운영에 어려움은 왜 생기며,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일까.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확산될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운영방안과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설문지법과 면담기법을 이용하였다.

선행연구 사례로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현황 평가, 각 시도의 작은도서관 조례 설치현황과 전체 도서관서비스에서 작은도서관이 파생된 계기를 살펴보았다. 하남시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과 이용도 조사를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방법은 하남시립도서관(나물도서관)에 등록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남시 공

1) 2016. 통계청

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운영자 설문에서는 도서관명, 설립주체, 운영주체, 소장자료와 예산현황, 프로그램 현황, 인력자원영역을 기본으로 운영상에 필요한 외부 자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이용자용 설문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이용빈도와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개선점, 공동주택 도서관의 역할을 조사영역으로 추가하였다.

1.3 선행연구

한국에서 도서관은 애국계몽운동 차원에서, 사회교화와 행정제도의 하나로 자리잡아왔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은 세대, 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가 설계한 성장위주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한 역할이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힘겹게 존립해왔다.²⁾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천천히 확장되는 동안 1960년대 이후 마을문고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작은도서관 운동의 시작으로 본다.³⁾ 임대점이 표방한 ‘적극적인 공공도서관 활동’으로서의 마을문고운동은 열악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 운동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마을문고가 중심이 되어 도서관을 설립한 사례도 여럿 있다.

양재한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공공도서관이 접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변화 과정도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정리하였다.⁴⁾

한 세대 이후 2000년대 초 새로 택지개발한 용인지역에 사립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박영숙은 『느티나무: 자발적, 행복한 공동체-도서관이라는 형식』에서 복지차원의 발상에서 책을 매개로 한 공동체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립문고라는 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박영숙의 저서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가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고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의 사례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 도서관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서 벌이던 문고운동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고유이름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취합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운동의 하나로 운영했던 공부방이나 문고가 지역 작은도서관 설립으로 가속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문화 전파와 독서문화활동의 성과로 작용하였다. 현재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동력이 생성된 계기이기도 하다. 주택법에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용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설치되고, 하남시에서 신규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립이 시작된 것도 비슷한 시기이다.

2) 양재한, 1998.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 《도서관》 제53권 제4호.

3) 최진욱 외, 2011. 『임대점의 공공도서관 사상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 양재한, 같은 연구.

2. 하남시의 도서관 서비스 현황

2.1 현황

하남시가 시로 승격된 것은 1989년 1월이다. 이후 1996년 9월 신장시립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도서관서비스가 시작되어 21주년을 맞이하였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신장도서관 개관시기 이동문고를 운영하여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였다.

도서관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서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 5조⁵⁾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하남시 조례에 의해서도 11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있다. 이중 사립 4개소를 제외한 7개소가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다.

하남시의 인구는 해마다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입인구의 80%는 전입이유로 주택과 직업 문제 꼽아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된 위례지구, 미사지구 입주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외부전출자의 인구 중 하남시, 화성시 등으로 유입인구가 많았는데, 앞으로 위례와 미사지구의 건설과 입주가 계속되어 앞으로 인구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곳도 신규 택지개발단지이다.

<표 1> 하남시의 인구증가율

	2015	2016	2017
하남시 인구	159,460	192,856	223,672

하남시는 개발시기와 구역에 따라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덕풍1동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 창우동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 풍산과 미사지구, 위례지구의 4개 권역 중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화 된 아파트는 38개소에 이른다.⁷⁾

5)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6) 2017, 경기도 통계

7) 하남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나룰도서관 제공

<표 2> 하남시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총 38개 단지

	~1998	~2009	~2016	계
500세대 이상	3	9	6	18
800세대 이상	2	1	6	9
1000세대 이상	0	1	1	2
1200세대 이상	2	1	3	6
2000세대 이상	1		2	3
계	8	12	18	38

1998년까지는 신장동, 2009년까지는 덕풍동과 풍산동, 2014~2016년까지는 위례와 풍산지구의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입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8개 단지의 총 세대수는 38,311세대에 이른다.

2.2 하남시 작은도서관 현황

2.2.1 시설현황

<표 3> 하남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다.⁸⁾

	개관	소재지
A	2007	덕풍동
가	2009	덕풍동
나	2009	신장동
B	2012	덕풍동
C	2012	신장동
D	2013	하산곡동
다	2015	선동
라	2016	망월동
마	2016	망월동
바	2016	망월동
사	2017	선동

이 중 4개소(알파벳 표시)는 사립작은도서관이고, 7개소(한글표시)가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은 구시가에,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주로 신시가에 분포하고 있다. 개관일을 기준으로 볼 때, 2009년에는 신장-풍산지구 택지개발지 내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2015년 이후로는 미사지구 내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주로 개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2017.05.설립일순) 2017.5 기준. 설립일 기준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는 면적 33평방미터, 소장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실사를 통하여 등록을 마치게 된다.⁹⁾

<표 4>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면적, 장서, 좌석 수

	면적	소장자료	열람석
가	85	8,906	30
나	46,822	6,918	20
다	109	7,181	30
라	108.61	1,201	40
마	93.18	4,091	40
바	102.816	2,320	40
사	91.37	2,500	40
총계	545.428	30,617	200
평균	90	44,000	35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33,117 권, 총 좌석 수는 240석이다.

도서관의 자료는 ‘가’ 도서관이 8,000권, ‘라’도서관이 1,200권으로 편차가 크나 설치조례의 1,000권을 모두 넘어섰다. 작은도서관의 면적은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90평방미터를 넘어 설치기준인 33평방미터를 훨씬 넘어섰다. 열람석은 평균 35석으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모두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의 기준 10석을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과 이용상의 편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면적인 도서관을 면담한 결과, 도서관 옆 공용회의실을 시청각실로 사용하나 도서관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른 도서관의 경우도 공용회의실을 시청각실이나 강의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은 등록된 공간보다 넉넉함을 알 수 있었다.

2.2.2 봉사대상 및 서비스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 세대수는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세대수 대비 가입세대 수

	총 세대수	가입 세대수	가입비율(%)
가	686	220	32
나	594	150	24
다	712	240	33
라	664	180	32

9)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기준).

마	976	116	12
바	1188	253	21
사	620	160	25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이라도 이용세대수는 20~30% 내외로 개인별 이용자가 아닌 세대별로 회원가입을 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7개소 모두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료대출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 대부분 입주민 외에도 열람과 자료이용은 가능하여 공공성을 실행하고 있었다.

2.2.3 소장자료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장서보유량은 다음과 같다.

<표 6>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소장자료현황

	소장자료	장서증가량	장서관리 프로그램	비고
가 도서관	8,906	500	책꽂이 3.0	유료
나 도서관	6,918	120	GOLDISⅡ	무료
다 도서관	7,181	2000	CLIB	무료
라 도서관	1,201	50	GOLDISⅡ	무료
마 도서관	4,091	3000	CLIB	무료
바 도서관	2,320	300	CLIB	무료
사 도서관	2,500	300	책꽂이 3.0	유료

장서수가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은 개관년수가 가장 오래된 ‘가’ 도서관으로 약 8,000권에 이른다. 장서수가 가장 적은 도서관은 ‘라’도서관으로 개관시 보유한 장서량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장서량은 개관년수 및 예산과 장서정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장서증가량은 300권 이상으로 장서증가량에는 입주민들의 기증도서를 포함한다. 모든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서 기증도서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기증과 재기증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월 평균 대출권수는 200~400권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출하지 않고 도서관 내에서 책을 읽고 가는 이용자 비율이 높았다.

도서관리프로그램은 보통 무료프로그램인 CLIB,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제공한 GOLDISⅡ를 사용하고 있고, 유료프로그램인 책꽂이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이는 개관시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상황과 정보에 따라 설치경로가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KORASISⅡ를 장착한 도서관은 아직 없는데, 제공받았지만 사용환경이 쉽지 않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모든 장서관리 프로그램은 모두 KDC 한국십진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도 십진분류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2.2.4 운영인력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종류는 다양하다. 보통 도서관의 직원이 라면 전담인력을 말하는데, 인력예산이 편성된 도서관과 입주민들의 자원활동으로 운영인력이 구성된 곳이 혼재하고 있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도 운영위원이나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전담인력이 있더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공동체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법적지위는 보통 자생단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상 예산을 잡수입 항목에서 배정하는 특징이 있다.

작은도서관 전담인력 중 사서자격을 보유한 곳은 1곳도 없으나 운영위원 중 사회복지, 교육, 독서관련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자원활동은 입주민 중 도서관운영위원이나 자원봉사참여자가 주로 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에게 봉사교육을 하고 도서정리나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표 7>전담인력 설치 여부와 운영자, 자원활동가 및 봉사자 상황

	전담인력(유급)	운영위원	자원활동	청소년	자격여부
가 도서관	○	○	○	○	독서
나 도서관	×	○	○	○	보육
다 도서관	×	○	○	○	교육
라 도서관	○	○	×	-	-
마 도서관	×	○	○	○	독서 복지
바 도서관	○	○	○	○	교육
사 도서관	○	○	○	-	교육

2.2.5 이용 및 이용자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평균 이용시간과 이용자는 표와 같다.

<표 8>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

	전담인력	개관시간(주당)	토, 일 개관여부
가 도서관	○	30	○
나 도서관	×	25	×
다 도서관	×	25	○
라 도서관	×	25	×
마 도서관	×	15~20	○
바 도서관	○	44	○
사 도서관	○	44	○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로 모두 유급전담인력이 있다. 자원활동가로만 구성된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중 개관시간이 15~25시간으로 전담인력이 배치된 도서관에 비해 비교적 짧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자원활동가나 청소년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개관하고 있다. 이 경우 자원활동가와 봉사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여 임시적인 운영방편이라 할 수 있다.

<표 9>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이용빈도>

빈도	순위
주3회 이상	1
월 5회 이상	3
월 2~3회 이상	2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빈도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2~3번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한달에 2~3회가 두 번째로 높았다. 공공도서관이나 마찬가지로 연인원보다는 같은 이용자의 이용횟수가 많았다.

<표 10>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이용목적<순위>

시설	자료	만남	프로그램	학습
3	1	4	2	5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에서도 이용목적은 자료이용, 프로그램 순으로 독서문화활동을 매개로 이웃을 만난다는 작은도서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입주단지에는 작은도서관에 부속된 경우에는 개인열람실이,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독서실이 설치되기도 하였는데, 작은도서관과 독서실 이용자는 이용목적이 별개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안쪽에 개인열람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입주민의 의견보다는 건설사의 계획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과 개인열람실 이용자가 원하는 운영시간의 괴리가 나타나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별개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다.

2.2.6 운영예산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주택법24조에 따라 아파트 안의 자생단체로 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세우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마다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예산배정과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운영예산

(단위: 천원)

	월 예산	인건비	자료	프로그램	기타
가 도서관	800	○	○	○	
나 도서관	200	X	○	X	
다 도서관	200	X	○	X	
라 도서관	400	별도	○	X	
마 도서관	84	X	○	X	
바 도서관	1500~1600	포함	○	○	
사 도서관	1600	포함	○	○	

표에는 외부지원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의 지원예산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제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자체 예산만을 반영하였다. 바, 사 도서관처럼 운영비를 책정하여 매일 8시간 이상 전담인력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운영하는 곳과 자원활동가가 무보수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섞여 있다. 프로그램 예산이 편성된 곳도 강사비나 재료비가 크게 들지 않는 책임어주기 등의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건비는 물론 자료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최소한의 운영예산만 편성한 곳도 있다. 이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는 기증을 받고 프로그램은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2.2.7 기타

<표 12>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독서	문화	취미	자료대출
가 도서관	○	○	○	○
나 도서관	X	X	X	○
다 도서관	○	○	○	○
라 도서관	○	X	X	○
마 도서관	○	○	○	○
바 도서관	○	○	○	○
사 도서관	○	○	○	○

작은도서관 모두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료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독서프로그램, 자원활동가의 문화프로그램, 지역민의 재능기부로 취미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프로그램은 보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료를 포함한 유료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서관과 강사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져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작은도서관에서는 개별적으로 기획하거나 정보를 습득하기 쉽지 않아 외부에서 도움받을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었다.

<표 1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서비스개선

	안정적인 개관	최신자료	강좌 및 프로그램	기타 시설
가 도서관	2	1	3	4
나 도서관	1	2	3	4
다 도서관	2	1	3	4
라 도서관	1	2	3	4
마 도서관	1	3	2	4
바 도서관	1	2	3	4
사 도서관	1	3	2	4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로 안정적인 개관시간을 1순위로 들었고, 최신의 풍부한 단행본 자료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자료 부족시에는 공공도서관의 기관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운영상의 준비를 요한다고 하였다.¹⁰⁾

<표 14> 외부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2014	2015	2016	2017
작은도서관 수	2	3	5	7
하남시보조금 지원대상	2	2	1	2
공모지원사업 도서관	0	0	2	3

2017년 나룰도서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도서관은 2개소이고, 1년 이상 운영한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하는 2018년 보조금 지원 대상 도서관은 4개소이다.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수에 비해 보조금지원 도서관이 적은 것은 도서관 현황평가에 의한 차등지원방식에 평가에 전담할 인력부족과 에너지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기타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곳도 3개소로 조사되었다.¹¹⁾

<표 15>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 참여 현황

	내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역 협의회	동종 협의회
가 도서관	○	○	○	-
나 도서관	○	○	-	-
다 도서관	○	○	○	-
라 도서관	○	○	○	-
마 도서관	○	○	-	-
바 도서관	○	○	○	-
사 도서관	○	○	○	-

10) 기관대출시 운반의 문제와 분실문제.

11)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사업, 나룰도서관의 은빛독서나눔사업,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우리동네학습공간, 경기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 활동으로 작은도서관 내, 아파트 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 등 SNS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기본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최근 입주한 공동주택은 입주민 전용카페를 근거로 이용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와 자원활동가 모집 등 활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5개소는 정보교류, 교육과 지역활동을 이유로 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하였다. 활동을 하지 않는 2개소는 참여할 시간적, 경제적 여력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작은도서관 전문 전국 단위 조직에 가입한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의 활동 외부 홍보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남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에 작은도서관 소식 공유와 행사안내를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률은 높지 않다.

<표 16>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지원 요청하는 분야

	시설	자료	인력	강좌 및 프로그램	기타
가 도서관		○			
나 도서관				○	
다 도서관			○		
라 도서관			○		
마 도서관				○	
바 도서관		○			
사 도서관				○	

설문과 면담을 종합해보았을 때, 자원활동가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인력 혹은 인건비 지원을, 전담인력이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최신자료 및 프로그램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서는 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자원활동가 등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담인력이 최신정보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사서전문가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 공동도서관 등 외부교육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하남시립도서관에서는 보조금 지원¹²⁾뿐만 아니라 책꾸러미대출¹³⁾, 은빛독서나눔¹⁴⁾ 파견, 순회사서¹⁵⁾파견 등 지원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없거나, 안정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 정보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12) 하남시 작은도서관 보조금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등급별 평가하고 c등급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매칭하여 7:3으로 부담하고 있다.

13) 하남시의 기관-단체대출. 200권 이상의 책을 2개월 이상 장기대출해준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자료를 선택할 수 있고 최신자료를 운영하므로 선호도가 높다. 이 외에도 작은도서관에는 별도의 대출증으로 10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디지털자료실에서 비도서자료(dvd)를 1주 대출 가능하다.

14)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서지도교육을 받아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한다.

15) 문화체육부 순회사서지원사업. 전문사서가 지역내 3~4개의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며 자료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 등 개별 관이 원하는 도움을 준다. 연속지원은 불가하며 하남시에서는 2016년 3개관에서 시행하였다.

3.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법령 및 자치법규 분석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에 나타난 것처럼,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운영예산으로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정기적인 운영비를 집행한다. 그러나 면담에서 운영자들은, 작은도서관이 입주서비스가 아닌 자생단체로 규정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운영비가 많건, 적건 혹은 유급 전담 인력이 있건, 없건, 1년에서 10년 된 작은도서관 모두 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용공간의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배정없이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들이 자원활동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소수의 자원활동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이 작은도서관의 가치나 자원활동가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자생단체인가? 봉사단체인가? 이 물음으로 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3.1 도서관법 관련

3.1.1 도서관 관련법

도서관에 관한 최상위법인 도서관법은 작은도서관진흥법과 지자체의 조례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사립도서관으로 정보이용 뿐만 아니라 학습과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한다고 명문화되어 사실상 도서관이 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안에서 봉사대상이나 역할이 아닌 시설기준으로 규정함을 알 수 있다.

1항.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4항.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¹⁶⁾

또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고 칭하며,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다.¹⁷⁾

16) 도서관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17) 같은 법 제2조 4항 가.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1.2 작은도서관진흥법과 자치법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순회사서제도, 교육 및 워크숍 등이 이 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순회사서제도나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2월 제정되어 작은도서관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2009년 하남시에 작은도서관 2개소가 등록하면서 법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7>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 구성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시장)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설치기준
제6조	등록폐관
제7조	등록취소
제8조	지원범위
제9조	지도감독
제10조	평가포상
제11조	시행규칙
	부칙

하남시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내용은 제정 당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 등록 초기의 상황을 반영하여 필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많게는 20년 이상 작은도서관이 초기 마을운동으로 형성된 타 지역의 경험과는 다른 하남시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남시 인근, 그리고 경기도의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 지원 경험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구체화 됨을 알 수 있다.

<표 18> 타 지역 조례와의 비교¹⁸⁾

항목	작은도서관 진흥법	경기도	고양	군포	안양	하남
1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목적
2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3	책무	기능	기능	시장의책무	기능	책무(시장)
4	법률관계	시장의 책무	시장의책무	운영자의책무	설치	적용범위
5	설치운영	운영자의 책무	운영자의책무	기능	공간위치	설치기준
6	운영방향	추진계획	추진계획	설치	설치기준	등록폐관
7	협력	분관위 지원센터	설치기준	등록폐관	시장의책무	등록취소
8	육성시범지구	지원	공립작은도서관	등록취소	등록취소	지원범위
9	국공유재산	평가 포상	공립 위탁	지원	운영인력	지도감독
10	후원	시행규칙	등록 폐관	관리운영	운영시간	평가포상
11	해외보급		등록취소	운영시간	휴관	시행규칙
12	실태조사		자치운영위원회	시행규칙	회원제	부칙
13	협회설립육성		운영인력		자료대출	
14	포상		행정적지원		입관제한	
15	관한 및 위탁		재정적지원		자료교환 이관폐관	
16			협력체계구축		운영위	
17			실태조사		운영위구성	
18			평가		운영위직무	
19			포상		운영위기능	
20			규칙		분쟁	
					시행규칙	

작은도서관이 100개소에 육박하는 고양시와 성남시의 경우에는 운영일자와 시간 등 기준과 규정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편이며, 공공작은도서관 위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표에 반영한 4개소 모두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성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안양의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준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규정도 마련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분쟁과 조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조례는 도서관 정책과 맞물려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¹⁹⁾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19) 150건, 2017년 8월 기준.

3.2 주택법관련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주민공동시설로 보고 있다.

3.2.1 주택법

주택법 제2조(정의)의 마항에서는²⁰⁾ 주민공동시설에 ‘도서관’에 관한 항목이 있다.²¹⁾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 55조의 2항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항목에서는

-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의무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주민공동시설이 입주민 자원에 의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²²⁾

위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작은도서관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과 함께 주민공동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관한 항목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경로당 관련해서는 지자체 조례²³⁾에 근거하고 있다.²⁴⁾ 이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설계에 반영된 도서관 전용공간을 설치한다. 500세대 이상은 대규모 단지로 건설사업자가 시설, 자료, 초기 인력을 조성하여 개관하는 추세이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작은도서관에 비치되는 1,000권 이상의 도서관 대한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자료기준의 1,000권에 도서관의 질과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20) 주택법 법률 제 14093호 일부개정 2016.03.22.

21) 제2조(정의) 이 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 도서관(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22) 개정 2015.5.6.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 및 제2호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3)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는 255건. 2017년 7월 기준.

24) 공동주택관리규약 내.

입주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준공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일에 중재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²⁵⁾

3.2.2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시·도지사가 준칙으로 정해야 하며,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정해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규약을 정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살펴보면 주택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문제를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법57조 제4항 각호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에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

25) 재인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 가격은 8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한 사항, 24)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2013.1.9.)²⁶⁾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규정하였다.²⁷⁾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이 까다롭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독서, 문화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둔 경우가 많았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는 자체의결기구가 공동주택의 산적인 많은 일들에 작은도서관에 대해 결정하는 일이 미루어진다. 입대의에서는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의 일부로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활동 계획을 세우며 개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²⁸⁾ 그러나, 면담결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운영에 관한 불안감이 컸다.

4.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과제

4.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자 면담

1. 00아파트의 경우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작은도서관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의 의지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영자원활동을 모집하는 단계까지만 추진되었고 자발적 활동이 진행되지 않아 공간조성만 해 둔 상태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문이 굳게 닫혀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한 관리소장 박00은 “공동주택의 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은 입주민의 의지가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서 앞선 기수의 입대위와 연계가 되지 않아 작은도서관 운영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는 운영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한계”라고 말하고 있다.

2. 000아파트의 경우에는 800세대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초기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를 따른 초창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음 개관하던 당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금을 2000만원 받았습니다. 시설과 장서 등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8년이 된 지금, 부족한 장서를 보완하면서 정례화된 프로그램을 진행

26) 네이버지식백과. 공동주택관리규약

27)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1,000권 이상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 미 포함)

28)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전국 작은도서관 6781개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책정된 상태라 주민 저항이 일부 있더라도 큰 긴장상태로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라는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3. 000아파트의 경우는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확산되는데 좋은 모델이 되었다. 하남시 관내 신문과 방송에 여러 차례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개관 2주년을 갓 넘기고 폐관되고 말았다. 개관을 결정하고, 공간을 조성하고 새 책이 들어오면서 십여 명의 주민봉사자가 아이들과 함께 난방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등록과 분류를 하느라 폐렴에 걸린 아이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아파트 관리소 건물의 2층에는 경로당이, 1층에는 어린이집이,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와 작은도서관이 있다. 새로운 임대에는 도서관 운영에 동의하지 않아 하루 4시간을 개관하던 인력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전액삭감하였고, 도서관은 문을 닫게 되었다. “도서관 운영을 반대하며 맨날 애기엄마들이나 가는 곳인데, 왜 우리가 돈을 같이 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이 있었다.” “임대인에 도서관을 계속 운영해달라는 서명부도 작성하여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공공도서관에서 지원받은 도서는 회수되고,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관리소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4. 하남시 00아파트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입주초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였고 개관 전에 단체등록을 하여 후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00아파트와 00아파트도 입주시기와 개관시기가 비슷하다. 운영방식도 비슷한데, 주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한달에 1~2번 도서관지킴이와 회의, 책정리를 하고 있다. “학교가 가까워서 학교자원활동과 학교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동네 도서관자원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정도는 기본이다”라고 한다. 이 도서관은 하남평생학습관과 업무제휴를 맺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개관을 준비하는 00아파트, 00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개관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지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주민자원활동가로 모집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면 시에서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보느라고 지쳤는데, 함께 해줄 사람이 이렇게 없는지 놀랐습니다. 자원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여태까지 몇 명 신청했나요?” “하고 묻다가 첫 번째라고 하면 ”다음에 신청할게요“ 라고 망설인다. ”돕는 건 하겠는데 먼저 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니까 부담스러운거죠“. 개관까지 마치고 임대위 임기가 만료된 분의 하시는 말씀도 시사할 점이 크다. “임대위에서 결정하면 운영하는 게 어렵겠어요? 하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자원봉사 할 주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모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주민들이 도서관을 왜 열었다 닫았다 하냐고 하는데, 자원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입주민 중에 지원자를 뽑아 하루에 네 시간씩 유급 지킴이를 두고 있다. “초기 개관시의 장서를 유지하여 이용자가 많지는

않고 단지 내 어린이집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6. 건설사에서 조성해준 공간에서 전담인력과 주민자원활동이 함께 힘을 합쳐 운영하는 00아파트의 사례는 하남에서도 모범적이지만, ‘안정적이라고는 하지 못한다’고 한다. 입주 초기 한시적으로 운영을 약속한터라, 입대의가 구성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일지 모른다. 일정한 시간을 열어야 하는 서비스 공간을 다른 사람의 봉사과 책임만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것처럼 나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닌가요?” 한 주민이 뼈있는 말씀을 하신다.

4.2. 운영제안

4.2.1.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쟁점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용시간과 서비스현황, 운영예산의 배정여부, 예산의 다소여부와 상관없이 입주민 혹은 입대의 간 갈등과 불안감이 있었다. 이는 ‘입주민’과 ‘이용자’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와 서비스 대상여부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생단체의 공간인가?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인가? 라는 두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자생단체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봉사하는 입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독서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비스의 기대요구와 수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²⁹⁾

설문과 면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입주민의 공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두 가지 기능이 상호 대립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공동주택별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주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간의 기능과 가치를 부정하고 폄하할 수는 없다. 레이 올덴버그는 저서 《The Great Place》에서 ‘제3의 장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집과 직장 외에 개인의 긴장을 풀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였다.³⁰⁾ ‘집, 직장이 아닌 장소’로서 필요한 제 3의 장소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면 누구나 환영할 일이다. 요즘 커피가 맛있는 도서관(Latte with Library)이라고 할 만큼, 공공도서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자료를 찾는

29) 시설면 (운영시간, 토요일개방, 장비 등)

인력면(참고서비스, 운영실무, 소통, 홍보 등)

예산(운영예산배정, 최신자료, 연속간행물, 장서다양성 등)

30) 이정미, 2012, 『제3의 장소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유형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도시거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5호인용.

방식의 도서관 이용에서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사고의 발상과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서관 공간을 재배치한다.

북유럽에서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대형마트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임대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나 일본에서 공공도서관을 재해석하여 사업공간과 함께 배치하여 관광명소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호텔을 도서관으로 꾸리기도 한다. 파주의 책공간에 대한 논의나 코엑스에 조성된 별마루 도서관으로 책이 있는 공간에 대한 대중의 인상을 바꾸기도 한다. 도서의 십진분류방법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 기관에 맞는 주제별 분류를 사용하는 시도도 생기고 있다. 한국의 70년 도서관 서비스와 40년 문고운동, 신자유주의와 다양성이 양립하는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말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자립하고 자유로운 색깔을 가진 공간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다.

4.2.2.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성 확보

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내의 공동체가 교류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직영일지, 위탁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후 법적안정성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시설, 운영, 인력, 예산 등 관리업무로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공간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운영 매뉴얼은 작은도서관 내부의 시설이용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아파트 전체의 단지 특성에 적합한 도서관 운용계획과 관리매뉴얼이 필요하다.

4.2.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커뮤니티 활성화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마을의 놀이터 역할이 축소되고 직접 만나기보다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활동 영역과 공간이 확장되었다. 공간이 주는 가치와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고 자기만의 기록을 만들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것과 반대로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책과 이웃’을 만나는 작은도서관을 즐기기에 어린이와 어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불안한 시대이다.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서비스라는 공동주택 운영 관리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의 자료와 공동체 정보, 지역정보 제공, 정보서비스의 질과 양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의미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닫는’ 사회적인 일상이 운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4.2.4. 공공도서관의 지원과 협력

작은도서관이 책을 보는 곳으로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과 주민들의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려면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실현하는 파트너 혹은 보조자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공모사업 등 재정이나 프로그램지원을 넘어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지역 내의 네트워크 활동을 독려하여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³¹⁾

4.2.5.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과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 2년마다 임기가 바뀌는 임대인의 구성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아파트 내의 작은도서관의 입지가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작은도서관을 자생단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입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보기에 입주민의 예산을 나누어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된다. 둘째, 실제로 저항이 심한 작은도서관은 임대위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설립한 경우,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 특정 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한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입주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안되어 있는 경우, 실무자들의 불안한 줄다리기가 계속 되기도 한다. 공공 작은도서관에도 많은 경우 1인 사서가 근무하게 되어 사서의 전문성 발휘나 성장에 한계가 생기기도 한다. 보조인력을 두지 못할 경우에는 입주민 자원봉사자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네 번째, 입주민들의 이용형태와 인식이 중요하다. 마을의 작은 공간으로 입주민들이 이용할수록 작은도서관은 안정적으로 존치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은 공간, 혹은 시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간 내의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취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망을 박차고 집 밖으로 나와 동네 한 칸에 있는 도서관을 찾으려면 온라인 이상의 오프라인의 공간과 만남이 매력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달라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 쉽게 자료를 접하고 지식정보가 오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행정서비스와 시스템, 우회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일례로 공공도서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온빛 독서나눔미> 사업을 진행했던 작은도서관들은 신청만으로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업 수행의 의지가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공모를 진행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은 자명한 일

31) 강순주, 2017.『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운영요소와 유형별 활성화 방안』

이다. 하남시의 <은빛 독서나눔> 사업이나 문체부의 <똑똑! 수요일에 만나요> 같은 문화사업은 일정한 기준의 작은도서관이 신청하면 그림책작가나 문화예술가를 파견하여 연간 7~8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준다.³²⁾ 간편한 신청과 선정, 수행절차를 가지고 있어 직접 기획과 협의, 정산을 진행하는 부담이 있는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작은도서관의 전담인력이 있다면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놀이터에만 나가면 아이들이 뛰놀던 시절이든, 키즈카페에 입장료를 내고 뛰노는 시절이든,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³³⁾ 예전에는 내집 장만을 한 사람들이 ‘정 붙이고 오래 사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사는 동안 즐거운’ 추억이 쌓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삶의 질을 제자리에 두어야 할까?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의 공간에 서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은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입주민이 만들어내는 마을의 분위기일 것이다. 서로 경계하고 담장을 높인다면 아무리 시세차익이 높은 아파트라도 머물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고, 가족들이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다.

가족관계나 직장의 상하관계,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고 자유로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휴식과 재생산이 이루어질 곳, 그 곳 중에 지역의 도서관이 빠질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마을 단위의 지역주민활동이나 소박한 마을운동으로 시작되고 확장되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파트 내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수용하고 서비스하는데서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집행에 의견을 내어 공공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요구가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장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색깔의 여부와 관련없이 분명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안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맞닿아 있다.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목표일 수도 있고, 현재 하남시의 도서관서비스의 실험이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발전된 도서관서비스로 가는 단계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3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작은도서관문화사업.

33) 최재연 외. 2015.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특징과 역할』, 국토계획 제50권 제4호.

1920년 대 미국에서 방과 후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근린주구 활동을 우리나라에 차용한다면 작은도서관이 근린주구의 근거지가 될 것.

5. 맺는말

우리나라는 도서관의 역사도 길지 않고, 개인들의 도서관에 대한 경험도 크지 않다.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기³⁴⁾까지 양적 확장을 도모하였다면,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설문조사 중 공공도서관이 근처에 생기더라도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여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게 하였다. 하남시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물리적, 심리적 접근이 쉽지 않아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또 다른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확장일로에 있는 하남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입주민 관리서비스의 하나이자,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시설, 인력, 예산, 자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적 기준에 의해 마련된 공간에 자체 예산을 배정하는 것부터 자료를 고르고 정리하는 일,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정산하고 마을 사람들이 오고가며 만나는 도서관의 일상을 지키는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갈 길은 짧지 않다.

주택법에 근거하여 하남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모두 38개소가 있다. 택지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작은도서관 설치가 확장될 예정이다. 하남시 공공도서관서비스가 시민에게 다가가려 한다면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실현시킬 중요한 서비스 기관이다. 그러나 설치부터 운영, 유지하여 자립하고 마을의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까지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의 운영안정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공동체문화와 공공도서관의 정보, 문화, 복지서비스가 만나는 거점으로서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3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참고문헌

단행본

- 「내아이가 책을 읽는다」. 박영숙. 알마. 2006
- 「아파트 공화국」.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역. 후마니타스. 2007.
- 「마을의 귀환」.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오마이북. 2013.
-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세실 앤드류스. 한빛비즈. 2013
- 「아파트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서울특별시. 2012.

참고논문

- 양재한. 1998.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제53호.
- 김소희. 2008. 『작은도서관운동의 마을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성공회대학교.
- 윤은미. 2008. 『커뮤니티 개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 김홍렬. 2010.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서울: 도서정보정책위원회.
- 안인자 외. 2012.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의식 분석에 관한 연구-G시를 대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2호 2014.
- 정현태 외. 2013.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
- 강순주 외. 2014.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운영요소와 유형별 활성화 방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
- 김우필. 2015. 『공부하는 도서관보다 놀이하는 도서관을 바라는 이유-작은도서관 사업과 공동체 문화에 대하여』. 《플랫폼》54호. 인천문화재단
- 최재연 외. 2015. 『지역 커뮤니티 검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제 50권 제4호.
- 박소희. 2016. 『커뮤니티거점으로서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전국도서관대회.
- 강순주. 2017.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자의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1).
- 윤유라. 2017. 『한국의 대중독서운동 ‘한책’운동에 대한 사례연구: ‘김해의 책’사업의 분석』.인문학논총.

관련 사이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http://www.clip.go.kr>>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http://elis.go.kr>>

경기통계. <<http://stat.gg.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하남시청. <<http://www.hanam.go.kr>>

<설문지> (이용자용)

해당되는 항목에 표해주시고, 없으시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일반사항

1. 귀하의 연령대는?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기타

() () () () () () ()

-도서관 이용

2. 주로 도서관 이용횟수는?

월 2회 이하 월 5회 이상 주3회 이상 자주

() () () ()

3. 도서관 이용 목적은?(중복가능)

독서 학습 만남 프로그램 참여 기타

() () () () ()

4. 도서관 방문시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 1~2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 () () ()

-도서관 서비스

5.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적절한가요?

적절하다 그렇지않다 희망 개관시간

() () ()

6. 도서관의 자료에 만족하나요?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부족 매우 부족

() () () () ()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_____분야

7. 도서관의 시설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나요?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부족 매우 부족
() () () () ()

8. 도서관의 시설이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 자료- 개관시간- 서비스- 기타-

9.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o,x로 답해주세요

- * 우리 아파트의 시설이므로 외부지원이 필요없다 ()
- * 외부지원을 받고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보다 지역 공공도서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
- * 작은도서관 서비스는 관리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경로당 같은 자생단체라고 생각한다 ()

10.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관리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리비나 잡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가구당 관리비를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월)

500원 내외 800원 내외 1000원 내외 1500원 이내 2000원 이상
() () () () ()

11. 관리서비스 혹은 자생단체로서 작은도서관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중복선택 순위별 1-2-3 가능) 체크표

안정적인 일상운영 ()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독서관장 ()
개인학습 () 동아리활동 () 문화강좌 () 실용강좌 () 기타 ()

<설문지> 운영자용

1 작은도서관 이름		
2 개관일		
3 등록일		
4 운영주체		
5 도서관 자격	관리서비스	
	자생단체	
6 면적		
7 열람석 수	좌식	
	입식	
	통합	
8 장서수		
9 장서구성	성인 : 어린이	
10 개인 학습공간		
11 평균 이용자수(주)		
12 월간 예산(만원)		
13 예산 사용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14 운영비 명목	재료비	
	홍보비	
	진행비	
	인건비	
15 프로그램비 명목	재료비	
	홍보비	
	진행비	
	인건비	
16 인건비	고정인건비	
	자원활동가비	
17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18 운영하는 행사		

19 자원활동가 여부	성인	
	청소년	
	어린이	
20 특수목적 여부		
21 운영자 직책 인건비지급여부 자원활동		
22 운영상태		
23 운영요일 및 시간		
24 연간 도서증가(권)		
25 직원여부	상근	
	시간제	
	기타	
25 운영자 자격증	사서	
	교육	
	복지	
	독서	
26 외부 교육참가		
27 필요교육	분야	
28 회비나 후원금 여부		
29 외부이용	이용만	
	대출까지	
	프로그램	
	기타	
31 등록회원수		
32 지자체 지원여부	경기도	
	경민대	

33 필요한 지원	시설				
	인력				
	도서				
	프로그램				
	교육				
	기타				
34 운영위원회 여부 구성					
35 운영위원회 모임(년) 횟수					
36 도서관 안내와 홍보					
게시판	밴드	공공기간	현수막	소식지	지역신문
37 도서정리프로그램			유무료 여부		
			제공기관		
38 참여하는 커뮤니티 작은도서관 관련					
39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 평가 (5점)			5점 만점		
40 작은도서관 이용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유의견 및 건의					

41 귀 도서관의 개관 혹은 운영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입주민(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 노동자

42 귀 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자원활동가의 봉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의지 안정적인 외부지원 이용자의지지

43 네트워크 활동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나요?

44 도서관의 3요소는 시설, 설비, 인력입니다. 공공도서관과 다른 작은도서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일 작은도서관의 4요소를 정한다면 무엇일까요?

45 운영상의 어려움	
46 직무수행상의 어려움	
47 관리상의 어려움	
48 귀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시설-연력-지원 순위별
49 내부 교육여부	